국무총리 훈령 제148호 **1978. 11. 29.**

소관부처 : 제1행조실(총무처)

제 목 : 국가기관,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의 비상근무지침 개정

국무총리 훈령 제128호 (75. 7. 10) 국가기관, 정부 투자기관 및 공공단체의 비상근무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의 비상근무지침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전시 사변 기타 비상사태에서 모든 행정기관과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 직원의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지침의 적용 대상기관은 모든 행정기관, 정부 투자기관 및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단체로 한다. 다만, 각군과 경찰은 자체 비상근무지침에 따른다.

제3조 (비상근무의 종류) ① 비상근무의 종류는 비상근무 제1호, 제2호 및 제3호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근무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되었을 때에는 국외, 국내출장과 휴가를 중지하고 정위치에서 근무하며, 휴일과 야간에는 소속 직원의 5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휴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확인하며, 휴일과 야간에는 소속 직원의 10분의 1이 비상근무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휴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확인하며, 휴일과 야간에는 소속직원의 20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한다.

제4조(발령) ① 비상근무는 총무처장관이 비상사태별로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전국 또는 일정지역을 지정하여 발령하되, 이를 신속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제5조 (비상소집) ① 각급 기관의 장은 휴일 또는 야간에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직원에 대하여 비상소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비상소집 결과를 지체없이 총무처장관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 포함)의 장은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중앙당직사령) ① 각기관의 비상근무상태에 대한 지도 감독과 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 기타 관계기관간의 협조 및 조정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당직사령을 둔다.

② 중앙당직사령은 비상근무 제1호 발령시에는 장관급이, 비상근무

제2호 및 3호 발령시에는 차관급이 된다.

③ 중앙당직사령은 총무처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제7조 (관계기관에의 통보) 총무처장관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에는 신속히 통일주체국민회의 사무총장,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등에게 발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훈령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무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